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8. 12. 20.>

보수교육 [ ] 면제 [ ] 유예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5일

신청자	성명	면허번호
	직종 [ ] 임상병리사 [ ] 방사선사 [ ] 물리치료사 [ ] 작업치료사 [ ] 치과기공사 [ ] 치과위생사 [ ] 보건의료정보관리사 [ ] 안경사	
신청사유	면제·유예 신청 대상 연도	
	구체적 면제사유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2항) [ ] 1.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[ ] 2. 군 복무 중인 사람(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) [ ] 3.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[ ] 4.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	
	구체적 유예사유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3항) [ ] 1.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·의료기관·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[ ] 2.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	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보수교육실시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사실 확인 등	→	기안 결재	→	통 보
신청인		처리기관: 각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						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